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26
----------	-----

2017. 6. 22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자 : 최병윤의원 등 7명
- 나. 발의일자 : 2017년 5월 31일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일
- 라. 상정일자 : 2017년 6월 15일
-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최병윤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으로 자녀돌봄휴가 대상 학교가 확대됨으로써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와 충돌되는 조항 및 중복되는 일부 조항 삭제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(특별휴가) ⑥항 삭제

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(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)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※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주요 개정 내용

-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출산·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등학교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 신설

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7.4.25>

3. 검토보고 요지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어린이집, 유치원 및 초·중·고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 및 교사상담을 위하여 2일 이내의(자녀가 셋일 경우에는 3일)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에 따라,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제6항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들의 행사참여를 위한 3일 이내의 특별휴가와 충돌되어 이를 삭제하고, 동 조례의 제18조제3항 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조항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(특별휴가)제7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올바른 조례개정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626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6월 일 (제356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최병윤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5월 31일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병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2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5월 31일

발의자 : 최병윤, 김학철, 연철흠,
박봉순, 박한범, 이언구,
이광진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으로 자녀돌봄휴가 대상 학교가 확대됨으로써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와 충돌되는 조항 및 중복되는 일부 조항 삭제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(특별휴가) ⑥항 삭제

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(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)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※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주요 개정 내용

-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출산·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등학교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 신설

(8)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7.4.25>

* 개정 전·후 자녀돌봄휴가 비교

- 당초 : 유치원, 초등학교 행사시 3일 이내
- 변경 :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행사시 2일 이내
(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)
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(특별휴가) ③항 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삭제
 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(특별휴가) ⑦항과 중복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관계없음.
- 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② (생략)	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u>	③ <u>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
④ ~ ⑤ (생략)	④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<u>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(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)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	⑥ (삭제)
⑦ ~ ⑨ (생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) ·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

2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
3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·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
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“임신기간”이라 한다)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
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 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 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-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-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-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-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〈신설 2017.4.25.〉